사후관리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3. 1. 1.] [관세청고시 제2023-3호, 2023. 1. 1., 일부개정.]

관세청(공정무역심사팀), 042-481-7883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◇ 개정 이유

○ 국민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실행 및 자체 제도개선 발굴 내용 반영

○ 2022.12.1. 발효 예정 한-이스라엘 FTA 및 한-캄보디아 FTA 적용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 개정고시 반영(별표1의 가, 별표1의 나)

○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 관련 '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

◇ 주요 개정내용

□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

○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본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

○ 사실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후관리 생략물품(별표 1의 나)을 별표2의 특기사항(※이하)에 추가하여 행정상 혼선 방지

□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(별표 1의 가, 별표 1의 나)

○ 신규 발효 예정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

○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

* 정제유(식품용), 전해액 첨가제(이차전지제조용), 망간(철강제조용), 원유(항공유 제조용), 감자전분(식품용) 등